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93호
- 발 의 자 : 김진수 의원 외 10명
- 발의일자 : 2015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0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출연 근거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의 재단법인 출연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3호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에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 (기본재산 등) ① 예술단체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 (기본재산 등) ① ----- ----- -----. |
| ② 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예술단체의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 ----- -----. |
| <u><신설></u> | ③ 시는 법인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

-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2015년 1월 30일 지정·고시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임.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2015.1.30. 제정·시행)

서울시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출자기관 : 서울관광마케팅(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그런데 현행 조례 제5조는 서울시 출연 예술단체의 기본재산과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의 근거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출연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